

문화재수리업

■ 업무내용

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 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업무

■ 등록기준

1. 자본금

종합	전문
법인/개인 2억원 이상	법인 / 개인 5천만원 이상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기술능력

종합업종	기술자격
보수단창업	1.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2.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목공(대목수)1명 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전문업종	기술자격
보수단창업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기술자 1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공 1명 이상
보존과학업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식물보호업	[문화재수리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단청공사업	[문화재수리기술자] :단청기술자 1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 :화공 1명 이상
목공사업	[문화재수리기능자] :대목수 1명을 포함한 한식목공 2명 이상
석공사업	[문화재수리기능자] :쌓기석공 1명을 포함한 한식석공 2명 이상
번와공사업	[문화재수리기능자] :번와와공 2명 이상
미장공사업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미장공 2명 이상
온돌공사업	[문화재수리기능자] :온돌공 2명 이상

※ 법인 / 개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업종	기술자격
문화재감리업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종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 법인 / 개인 자본금 없는 업종

업종	기술자격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수리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문화재수리기능자]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문화재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3.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15~20일 이내 소요